

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
(앞쪽)

1. 기본사항

|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① 법인명 | (사)한국청정기술학회 | 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 | 124-82-07606 |
| ③ 대표자 성명 | 허광선 | ④ 공익법인등 구분 | 민법상비영리법인 |
| ⑤ 전자우편주소 | cleantechnol@pukyong.ac.kr | ⑥ 사업연도 | 2023-12 |
| ⑦ 전화번호 | 070-7636-7939 |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| 1995-06-23 |
| ⑨ 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19 한국화학회관 3층 | | |

2. 기부금의 수입·지출 명세

(단위: 원)

| ⑩ 월별 | ⑪ 수입 | ⑫ 지출 | ⑬ 잔액 | 월별 | 수입 | 지출 | 잔액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전기이월 | - | - | | 8월 | 1,000,000 | | 2,387,400 |
| 1월 | | | | 9월 | | 2,387,400 | 0 |
| 2월 | 3,000,000 | 1,612,600 | 1,387,400 | 10월 | | | |
| 3월 | | | 1,387,400 | 11월 | | | |
| 4월 | | | 1,387,400 | 12월 | | | |
| 5월 | | | 1,387,400 | 합계 | 4,000,000 | 4,000,000 | |
| 6월 | | | 1,387,400 | 차기이월 | - | - | |
| 7월 | | | 1,387,400 | | | | |

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
(단위: 원)

| ⑭ 지출월 | ⑮ 지급목적 | ⑯ 지급건수 | ⑰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 | ⑱ 금액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2023-02 | 청정기술 간행비 총당 | 1 | 한림원 | 1,612,600 |
| 2023-09 | 추계학술대회 및 행사비 총당 | 1 | 한림원 | 2,387,400 |
| | | | | |
| | | | | |
| ⑲ 연도별 | ⑳ 지급목적 | ㉑ 수혜인원 | ㉒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 | ㉓ 금액 |
| 2023 | 청정기술 간행비 총당 | 700 | 한림원 | 1,360,700 |
| | 추계학술대회 및 행사비 총당 | 239 | 한림원 | 2,387,400 |
| 합계 | | 939 | | 4,000,000 |

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
(단위: 원)

| ㉔ 지출월 | ㉕ 국가명 | ㉖ 지급목적 | ㉗ 지급건수 | ㉘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 | ㉙ 금액 |
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| | | | | |
| ㉚ 연도별 | ㉛ 국가명 | ㉜ 지급목적 | ㉝ 수혜인원 | ㉞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 | ㉟ 금액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합계 | | | | | |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
2024년 3월 15일

제출인: 사단법인 한국청정기술학회



(공익법인등의 직인)[인]

작성 방법

- 1. 기본사항 : ① ~ ⑨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,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, 전문모금기관, 사회복지법인, 어린이집, 학교(유치원), 의료법인, 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, 비영리외국법인, 사회적협동조합,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| | |
|-------------|---|
| 한국학교 |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)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. |
| 전문모금기관 | 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. |
| 사회복지법인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. |
| 어린이집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(단체 포함)을 말합니다. |
| 학교(유치원)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(단체 포함)을 말합니다. |
| 의료법인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. |
| 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. |
| 비영리외국법인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법인 말합니다. |
| 사회적협동조합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법인 말합니다. |
| 공공기관등 |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. |

- 2. 기부금의 수입·지출 명세
 - ⑩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(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(1월~12월) 법인 예시)
 - ⑪란과 ⑫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.
 -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.

- 3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내사업)
 - 국내사업 관련 ○○지원사업(장학금지급 등), 일반관리비, 기금조성비(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), 그 밖의 비용(구체적인 내용 기재) 등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 다만,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⑭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⑰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.
 - ⑰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, 지급목적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 - ⑱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. 예시)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.
 - ※ 예시(장학금 지급: 10명에게 10만원씩 1월, 2월에 각각 지급, 복지단체 지원: A 복지단체에 2월에 1,000만원, 1회 지원(수혜인원 50명))

| 지출월 | 지급목적 | 지급건수 |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 | 금액 |
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월 | 장학금 지급 | 10 | 김우수 외 | 1,000,000 |
| 2월 | 장학금 지급 | 10 | 김우수 외 | 1,000,000 |
| 2월 | 복지단체 지원 | 1 | A복지단체 | 10,000,000 |
| ∴ | ∴ | ∴ | ∴ | ∴ |
| 연간 | 지급목적 | 수혜인원 | 대표 지급처명 (단체명/개인) | 금액 |
| 2013년 | 장학금 지급 | 10 | 김우수 외 | 2,000,000 |
| | 복지단체 지원 | 50 | A복지단체 | 10,000,000 |
| 합 계 | | 63 | | 12,000,000 |

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
-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,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, 그 지급금액과 지급목적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
- 4. 기부금 지출 명세서(국외사업)
 -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,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.
 - ⑳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,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. 다만,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, 지급목적, 국가명, 수혜인원,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.
 -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.